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6510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5. 선고 2021구단6934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29,636,360원, 지방교육세 45,927,270원, 가산세 50,244,4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본문이 규정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단서는 '다만,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된다는 취지이지,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먼저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된 것)에서 신설된 것인데, 원고의 경우 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시행령 시행일 이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 시행일 이전인 2016. 4. 28. 이미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 상태에서 2019. 4. 10. 대도시 내의 다른 곳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2) **구 지방세법 제13조**는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라는 표제 하에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각 호의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봄)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는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이라는 표제 하에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각각의 부동산 취득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4) 이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는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도시 중과 대상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즉,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4호 본문**에서 그중 하나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다만,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본점은 원래 ○○도 ○○시 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6. 4. 28. 본점을 위 ○○시에서 ○○ ○○구 C으로 이전하였고, 이후 2019. 4. 10. 같은 송파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9. 6. 5. 본점을 다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의 과거 본점 소재지인 ○○도 ○○시와 이후 원고가 본점을 전입한 ○○○○시는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즉, 대도시)에 해당한다. 다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의미하므로, 원고가 ○○도 ○○시에서 ○○○○시로 본점을 전입한 것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에 규정된 대도시로의 전입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시에서 ○○○○시로 본점을 전입한 2016. 4. 28.로부터 5년 이내인 2019. 4. 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정한 요건도 충족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중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그 전입 이후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중과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이 추가되었는데, 위 2017. 12. 29.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는바(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2019. 4. 10.로서 위 시행일 이후이므로, 결국 2010. 3. 1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에도 그 지위가 유지되고 있던 원고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본문에 따라 일단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4) 이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단서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이후 부동산 중과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시에서 ○○○○시로 본점을 전입한 바 있는 원고의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및 체계, 그 입법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단서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유에 관하여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입의 시기'에 관해서는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전입의 시기'를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전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아무런 법령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본문) 또는 그 예외 사유(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관련 법령의 체계상 해당 납세자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의 부동산 중과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점, ④ 그런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단서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유에 관하여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는 부동산 중과 대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와 그 문언 내용이나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점, ⑤ 결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단서를 둔 취지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단서는, 그 본문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부동산 중과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단서가 정하고 있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